

제288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명 주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67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2. 3. 15.
- 회 부 일 : 2022. 3. 16.

##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 3. 주요내용

-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안 제7조)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10조의3)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제92조의 2 제1항(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3항 제3호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2. 3. ~ 2. 23.)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개정사항(제92조2 제1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진료를 목적으로 임시(가설)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1)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3호2)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해당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바 세제지원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는 해당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기를 2021년 6월 1일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적인 소급입법과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적용례 규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발생 초기로 소급하여 의료기관에 세제지원하려는 공익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을·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 (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지방세법」

### 제109조(비과세)

- ①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